

# 2023 법무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갱신 및 가입 안내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법무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험가입기간은 2023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이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개시일(보험료 송금일자)로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입니다. 갱신 가입자는 **2023년 8월 1일(화)까지 가입 신청 및 보험료 입금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법무사배상책임보험 기본사항

<b>담보내용:</b> 법무사로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과실로 인해 고객 및 제3자에게 부딤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및 사고처리 제비용 보상
보험기간: 2023.8.2 00:01 ~ 2024.8.2 00:01 (단,8.2일 이후 신규가입시 가입일부터 2024.8.2일)
보험회사: DB손해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대한법무사협회가 계약자이며, 보험 가입하는 각 법무사가 피보험자임
도입경과: 2010.7.6일 대한법무사협회, 국내손해보험사 및 록톤코리아 단체협약 체결 도입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보상한도는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을
뜻하며,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부담금 이하금액은 보상되지 읺
음. 본 상품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총 9가지(최소5천만원~최대연간 총5억원)의 보상한도기
선택 가능하며, 자기부담금 300만원을 기본으로 함. 단, 자기부담금 500만원 선택시 -5%, 1
천만원 선택시 -10%가 기본보험료에서 할인 적용
<b>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선택가입 사항으로 추가보험료 발생)</b> : 2016.8.2일부터 신설

본 특별약관은 법무사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며, 이는 고의적이고 명백한 의도에 의한 직접 결과이거나 혹은 고용한 사무원이 법무사를 대신하여 전문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무원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단독/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에 기인한 것을 전제로 함.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등의 세부사항은 별점의 사무원 부정행위 담보에 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 보험이 왜 필요합니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무사 자신의 손해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이행보증보험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법무사의 손실은 보장받지 못함)
사고처리를 보험회사가 대행하여 시간절약, 법무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개별가입 대비 저렴합니다.(단체계약 효과)
협회 단체보험이므로 보험료 협상 및 보상처리에 유리합니다.
법무사의 보험가입으로 임.직원이 수행한 업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없어도 피해자의 배상청구가 있으면 보험사고 접수 후 보상 됩니다.



#### 3. 법무사배상책임보험 질문/대답

□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됩니까?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와는 달리 가입할지 여부를 법무사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면 공제나 이행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등은 법무사법 제26조가 위임인의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고의로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도 보상을 해 주지만(단, 법무사에게 구상권행사함)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 법무사나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무사나 직원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 대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 되나요?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 과실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하며 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 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 및 사기행위"로 인한 법무사의 금전적 손실은 특별약관 선택 가입(추가 보험료 발생)을 통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에 적용되는 배상청구기준증권은 무엇인가요?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이후에 수행한 업무로 인해 보험기간 종료일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계속적인 보험갱신 이 이뤄지면 연속된 담보가 되나 보험갱신이 되지 않거나 해지하는 경우, 기존 보험기간 동 안 이뤄졌던 업무라 하더라도 만기일 또는 해지일 이후 배상청구 되는 때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보고연장기간 70일 적용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험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u>보험종료일로부터 70일까지만 보상청구</u> 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계속적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4. 보험금 지급 사례 (1건 4천8백만 원 지급됨)

□ 위조서류상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 하여 손해배상

사건 경위: 법무사 사무장이 A캐피탈사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고 A사 직원과 부동산 소유자라는 B와 만나 관련서류를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 작성, 등기 접수 후 A사에 통보. 이에 A사는 B에게 대출금 1억8천만원을 지급. 그러나 이후 B가 서류를 위조해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사실이드러났고, A사는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청구 함.



처리 결과: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법무사를 대신해 A사와 손해액 중재를 하였고, 결국 법무사의 과실을 30%로 확정(법무사의 과실이 있으나 그보다는 피해자 A사가서류 위조사실과 본인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더 크다는 법률검토 근거). 보험사는 손해액 1억8천만원의 30%인 5,400만 원 중 본인부담금 등을 차감한 4,800만원을 지급함.

## 5. 보험 갱신 및 가입 절차

### ① 가입신청서 작성 요령

- 개인용: 법무사 1인 단독가입 / 복수가입용: 법무사 2인 이상 공동가입 (합동 및 법인)
- 직전년도 매출액 확인: 2인 이상 법무사 복수가입 시 합동 및 법인 소속법무사의 1인당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보상한도액 (Case 1~ 9) 선택
- 신청서상 선택한 보험료에서 무사고할인율 또는 사고할증율을 적용하여 납입보험료 산출
- 사무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 확장 추가담보 선택가입의 경우 무사고할인율 또는 사고 할증율 적용하지 않음.

## ② 팩스 승부: 0503-8379-2008 (또는 02-2011-0301/2)

- 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매출액 확인 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업무보고서 중 1개 선택

#### ③ 보험료 계짝이체 : 신안은앵 / 140-005-862100 / 예금쭈 : 록톤캠퍼니쯔코리아

- ④ 2023년 8월 2일 이후 신규 가입하시는 경우 가입일(보험료 입금일)로부터 만기일(2024년 8월 2일)까지 일할 계산되오니 록톤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 ⑤ 약관 및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 등 중요서류는 반드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ockton Companies (Korea) Inc.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 전화: 02)2011-0300 / 0353~6

팩스: 0503-8379-2008, 02)2011-0301/2

상담 및 안내: 전문인보험팀

이순옥 상무 / 윤원 이사 / 윤자영 부장/

박순정 과장 / 이채은 주임